

- 구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년 11월 16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0년 11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2000년 11월 21일

제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도시건설국장 천 동 성

나. 제안이유

- '97. 8월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 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분류
- 따라서 기존의 「간이상수도관리표준조례(95. 4)」를 개정법령의 내용에 부합되게 수정·보완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제명을 구미시간이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개정 함.
-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을 당초 간이상수도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함.
-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·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함(제3조)

-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함(제6조, 제7조)
-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,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되,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제14조)
-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·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제22조)

라. 참고사항

- 수도법 제32조제2항, 제38조의2 제2항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윤 구

- 이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('97. 8. 28 법률 제5395호) 및 2000. 2월 시달된 건설교통부의 간이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표준안을 기초로, 제명을 비롯한 주요내용을 대폭 개정한 것으로서, 간이상수도 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하고, 수질검사조항을 신설하는 등 먹는물 관리 강화에 보다 중점을 둔 개정안이라 사료되며,
- 기타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